

발행인 : 용산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보

선 람	기관 의 장

제2020호 2019. 5. 24.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고시 제2019-69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2

◎ 공 고

공고 제2019-479호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내역 공고 5
 공고 제2019-484호 : 공인 신조 등록 공고 7
 공고 제2019-485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9
 공고 제2019-488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 : //www.yongsan.go.kr](http://www.yongsan.go.kr)(용산소개 → 용산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199-6700 / 전송 : (02)2199-5510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용산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변경 지정 사유 및 목적: 용산용문시장 명칭 변경(용문전통시장→용산용문시장)에 따른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각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
 - ※ 인접 자치구 관할 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 자치구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우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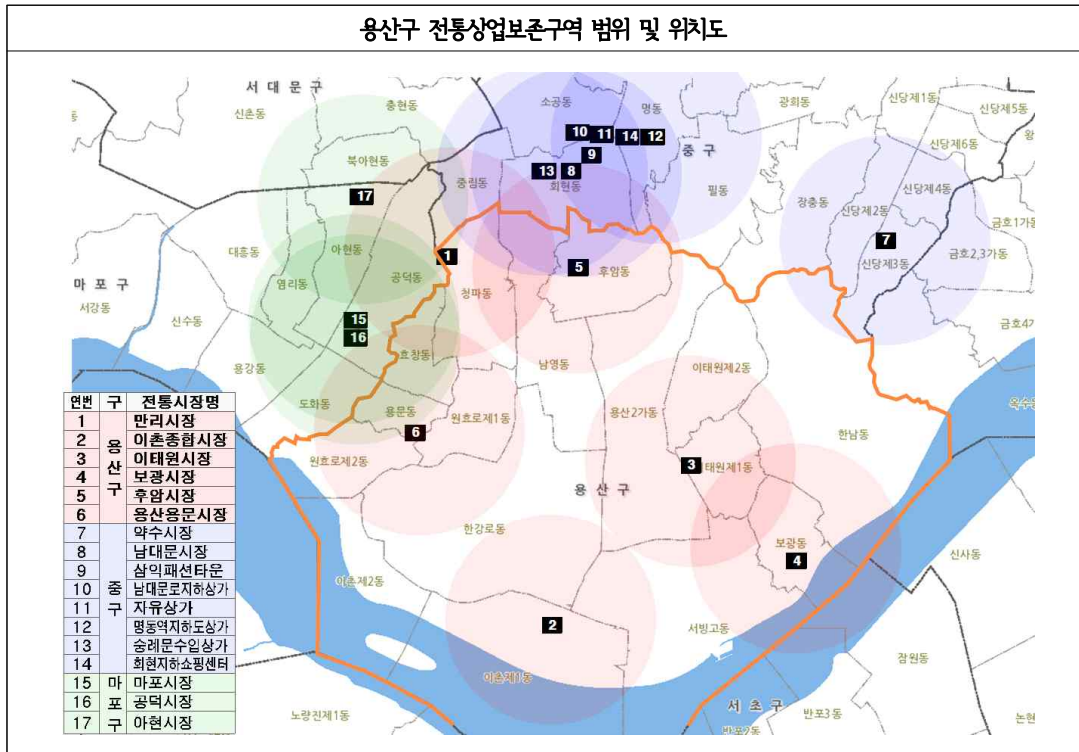
나. 전통시장의 위치 ※ 전통시장의 경계(구역)은 관할 자치구 등록 사항에 따름.

연번	자치구	전통시장명	위 치	비고
1	용산구(6)	만리시장	용산구 효창원로 270 (서계동 260-1)	
2		이촌종합시장	용산구 이촌로65가길 72 (이촌동 301-18) 일대	
3		이태원시장	용산구 이태원동 56-9	
4		보광시장	용산구 보광동 260-8	
5		후암시장	용산구 후암동 103-6 일대	
6		용산용문시장	용산구 용문동 41-17 일대	명칭 변경
7	중구(8)	약수시장	중구 다산로 114-12 (신당동 372-2796) 일대	
8		남대문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4길 21 (남창동 49번지) 일대	
9		삼익패션타운	중구 남대문시장 8길 7 (남창동 5) 일대	
10		남대문로지하상가	중구 남대문로 14 (남대문로3가 13-3) 일대	
11		자유상가	중구 남대문로 36 (회현동 202-1) 일대	
12		명동역지하도상가	중구 퇴계로 지하 124 (충무로2가 65-12) 일대	
13		승례문수입상가	중구 소월로 3 (남창동 51-1)	
14		회현지하쇼핑센터	중구 소공로 지하 58 (충무로1가 52-41) 일대	
15	마포구(3)	마포시장	마포구 마포대로6길 16 (공덕동)(C동) 마포구 만리재로 23 (공덕동)(A동) 일대	
16		공덕시장	마포구 만리재로 19 (공덕동) 일대	
17		아현시장	마포구 마포대로21길 70 (아현동) 일대	

3. 지정고시 및 열람방법

가. 고시방법: 용산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나. 열람방법: 방문열람(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일자리경제과, ☎ 2199-6813)



- ※ 상기 도면은 참고 자료이며 실제 거리 측정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 시 관할 자치구와 협의 필요.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479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해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를 요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내역

차량번호	자동차 제원	운행정지 사유	운행정지 신고일
09도3232	차명: 옵티마 리갈 차종: 승용 중형 형식/모델연도: GDN23J/200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소유자의 요청)	2019. 5. 15.
51노4118	차명: NEW 그랜저XG 차종: 승용 대형 형식/모델연도: XG-25D-A5/200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소유자의 요청)	2019. 5. 16.

2.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6. 7.
3. 유의사항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발견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199-779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484호

공인 신조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공인을 동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최초사용일 : 2019. 6. 7.
2. 등록사유 : 원효로제1동 인증기 구매
3. 공인등록 내역
 - 규격(cm) : 원효로제1동장인(민원사무전용) 2.4 × 2.4
용산구청장인 (원효로제1동주민센터민원사무전용) 3.0 × 3.0
 - 재 질 : 우레탄(특수고무)
4.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별도 붙임

신조 공인명 및 인명

공인구분	공 인 명	규격 (재질)	인명	신조사유
특수공인 (인증기용)	원효로제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4 × 2.4 (우레탄- 특수고무)		인증기 구매
특수공인 (인증기용)	용산구청장인 (원효로제1동주민센터민원사무전용)	3.0 × 3.0 (우레탄- 특수고무)		인증기 구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4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제정이유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역할 및 과제선정 등 (안 제4조)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위원회의 운영 (안 제11조)

바. 안전제출, 연구자 공개 및 용역실명제 (안 제12조 ~ 제14조)

사.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 (안 제15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기획예산과 창의경영팀
(전화 2199-6443, FAX 2199-5540, e-mail : aero21@yongsan.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4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능동적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수점검 실시한 “2019년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정보목록 및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을 현행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충실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 신규업무목록 추가 및 폐지업무 삭제,
 변경업무명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현행화

나. 【별표 2】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대상목록 등 비공개 세부기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전화 : 02-2199-6531, FAX : 2199-5560, 이메일 : 2015020264@yongsan.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